

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

풀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(유)

1. 임시허가 기준, 규격, 요건

- 주요내용: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, 직접 업데이트(OTA)하는 서비스
- 유효기간: 2022.3.28.~2024.3.27

2. 임시허가 조건

-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폴스타코리아의 책임하에 “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” 수행
 - * 무선 업데이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폴스타코리아 본사 책임하에 수행
 - 자동차 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OTA 적용시에도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, 교통안전공단에 제출(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전송)
 - * 리콜(자동차관리법 제31조) 및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(자동차 관리법 제32조의 2)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, 국토교통안전공단에 신고 및 통지
 - “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”가 ‘제작 결함의 시정’ 또는 ‘하자에 대한 무상수리’, ‘튜닝’에 해당할 경우, 해당 자동차 관리법령 준수

3. 임시허가 대상인 신제품,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생명·건강·안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

-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실시하던 제어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고객이 주차 후, 고객 설정에 따라 무선으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본 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이 낮음
- 특히, 운행 중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 중에 진행되는 것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업데이트 오류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될 것

4. 이에 대한 손해 배상방안 내용

-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
 - 생산물배상책임보험(1인당 1.8억원, 대물 사고당 10억원, 총보상한도 무제한)
 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10억원 가입)
- 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(유)에서 전액 배상